2015년 청학동 종합감사 결과보고

감사목적

○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 공직기강 해이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감사 개요

□ **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

○ 2015년도 감사·감찰 기본계획

□ **감사기간** : 2015. 10. 19. ~ 10. 22. [4일간]

□ **감사범위** : 2013. 10. 0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중점감사 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통·반장 관리 분야

○ 복지행정서비스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 및 지원관리 실태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 실태

○ 민방위·공사분야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Ⅱ 감사 결과

1 총 괄

☐ 감사처분 내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14건)			재정상 (5건)			신분상(1)	
시정	주의	현지조치	추징(1)	회수 (3)	환불 (1)		
5	9		5,000원	309,820원	20,000원	훈계1명	

☐ 감사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야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14건	5건	1건	
1	예산회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훈계 1명	
2	〃	물품 구입 가격조사 부적정	주의			
3	〃	교육비 지출 부적정	주의			
4	〃	공공요금 납입 지연 ➲ 가산금 490원 환수	시정	490원 회수		
5	〃	자율방범대 보상금 지급 부적정 ➲ 교통비 등 24건 243,000원 환수	시정	243,000원 회수		
6	주민자치 센 터	주민자치센터 강사 소득세(지방소득세) 미부과 ➲ 8명 66,330원 환수 후 부과	시정	66,330원 회수		
7	주민등록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부과 · 징수 및 주민등록증 발급 관리 부적정 ➲ 4명 20,000원 환불, 1명 5,000원 징수	시정	20,000원 환불 5,000원 징수		
8	〃	주민등록증 말소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시정			
9	서무 등	통 · 반장 관리 업무 소홀	주의			
10	〃	관용차량 관리 업무 소홀	주의			
11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카드 등 관리 부적정	주의			
12	〃	장애인 재판정(재진단) 관리 소홀	주의			
13	〃	복지대상자 가정 방문 업무 소홀	주의			
14	민 방 위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주의			

2 총 평

○ 이번 청학동 종합감사는 예산회계,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동 행정 전반에 대해 총 14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5, 주의9), 재정상 조치(회수 309,820원/3건, 환불 20,000원/1건, 징수 5,000원/1건) 처분 요구**함.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III 주요 지적사항

1 예산 회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관련 없는 전출자들에 대한 방석 등 구입비로 총 2건, 85,97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행정상 주의 】

2 예산 회계 물품 구입 가격 조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청학동에서는 2건, 8,758,130원의 물품 구입시 시장가격조사를 소홀히 하여 1인 견적업체의 제시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견적금액을 그대로 지출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행정상 주의 】

3 예산 회계 교육비 지출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학동에서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에 참여함에 있어 교육주관 부서인 총무과의 교육발령 없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교육비 160,000원을 공공운영비(201-02)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 행정상 주의 】

4 예산 회계 공공요금 납입 지연

○ 청학동에서는 2013년 12월분 유선방송 수신료를 지출하면서 납부기한이 17일 지난 뒤인 2014.1.6일 지출함으로써 490원의 연체료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2013년도 분을 다음해인 2014년도에 지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행정상 시정, 재정상 490원 회수 】

5 예산 회계 — 자율방범대 보상금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의하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학동에서는 자율방범대원운영비를 지출함에 있어 청구내역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개인이 사용한 교통비 등 23건 243,0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 행정상 시정, 243,000원 회수 】

6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 강사 소득세(지방소득세) 미부과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1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세액 10/100의 지방소득세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학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 1월분 강사수당을 8명에게 지급하면서 66,330원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 행정상 시정, 재정상 66,330원 회수 및 부과 】

7 주민등록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징수 및 주민등록증 발급 관리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 보안 미적용(2006.11.1. 이전 발급된 증),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이외의 기록사항이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학동에서는 ◩◩◩ 등 4명에 대하여 성명변경과 보안기능추가의 사유로 수수료가 무료임에도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 하였으며, ◨◨◨에 대하여는 분실 재발급을 사유로 신청하였으므로 수수료 5,000원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수수료 5,000원을 인증처리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부과·징수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등기 신청자인 ◔◔◔ 등 3명에 대하여 등기 발송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정리하지 아니 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행정상 시정, 재정상 : 20,000원 환불, 5,000원 추징 】

8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말소 대장 작성 및 관리 업무 소홀

○ 주민등록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하며 말소자가 재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말소대장에 삭선하고 재등록 일자(재등록지)와 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청학동에서는 같이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 등 75명에 대하여 무단전출로 인한 말소·거주불명등록대장을 관리하면서 재등록 및 전출에 따른 변동사항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2015.1.28일 말소된 ◓◓◓는 대장에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말소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행정상 시정 】

9 서무일반 통·반장 관리 업무 소홀

○ 인천광역시연수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두며, 통·반장은 동장이 위촉한다. 또한, 동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통·반장은 적십자회비 면제 및 쓰레기종량제 일반용봉투 일부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따르면 위촉된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통장이 사망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 해촉된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구청장에게 반납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통장신분증의 발급, 재발급, 회수, 폐기 사항을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청학동에서는 2013.11.25일부터 2014.9.15일까지 위촉된 8명의 통장의 통장증 발급 신청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2015.3.15.일에 일괄적으로 발급 신청하였으며, 2015년 이전에는 통장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통·반장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통별로 쓰레기 봉투 지급 대장에 수령자 확인을 받아 지급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에는 42개통의 지급대장이 없으며, 2014년에는 100개통의 지급대장을 찾지 못하는 등 통·반장 쓰레기 봉투 지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행정상 주의 】

10 서무 등 관용 차량 관리 업무 소홀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제23조(기록관리)에 의하면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학동에서는 관용차량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2013년도(30회), 2014년도(45회), 2015년도(40회) 총 115회에 걸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행정상 주의 】

11 사회복지 | 장애인 복지카드 등 관리 업무 부적정

○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1권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의 회수 및 폐기요령에 따르면 거주불명자를 제외한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또는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복지카드 등을 반환해야 한다.

○ 그러나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4.07월 이후 사망한 4명에 대해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카드를 회수하지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행정상 주의 】

12 사회복지 | 장애인 재판정(재진단) 관리 업무 소홀

○ 2015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장애인이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재판정 통보 후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해야 함에도

○ 청학동에서는 2015.04.21 재판정 촉구문서를 보낸 후 2개월을 지체하여 2015.07.21에야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절차로 2주간의 의견청취기간이 종료하면 익일 취소처분 후 다시 2주간의 기간 내 등록증 반환을 통보하여 회수해야 함에도 의견청취기간이 종료한 후 20일 후인 2015.08.26에 등록(취소) 및 반환통보가 되어 결과적으로 등록증 회수가 지연 되었으며, 남구로 전출한 장애인에 대한 사후처리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전입지로 통보 하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 재판정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행정상 주의 】

13 사회복지 | 복지대상자 가정 방문 업무 소홀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제4부 복지대상자관리 Ⅰ.복지대상자 지원(모니터 & 케어) 강화」에 따르면 정기계획에 의한 가정방문 실시를 권고함은 물론, 정기계획 외 신규복지대상자 선정, 전입, 가구원 추가 등 가구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14일 이내 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자격관련 조사가 아닌 지원사항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학동에서는 2013. 9월부터 ~ 현재까지 신규선정 및 전입 기초생활수급자 등 37명에 대해 방문을 하지 않았고, 2014년 7월과 8월의 2개월 동안 ▦▦▦ 등 3명의 경우 선정(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복지대상자 모니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행정상 주의 】

14	민 방 위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등 은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3개월이상 해외 여행 및 체류 중인 불참자 38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3개월 이상 출국자로) 일괄 면제 조치하는 등 민방위 업무 처리에 소홀함.

【 행정상 주의 】